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원 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검토보고서



2024. 4.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4. 4. .

운영위원회

1. 검토과정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정순옥 의원 외 12명(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손범구, 고명옥, 이선주, 정창근, 황국주, 서보영, 박정환, 최홍린, 박종길)
- 발의일자: 2024. 4. 5.
- 회부일자: 2024. 4. 5.
- 검토기간: 2024. 4. 8. ~ 4. 11.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별표 5]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개정(2023. 12. 14.)에 따라 달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변경(안 제3조제2항)
 - 의정자료수집 · 연구비(월액): 90만원 → 120만원
 - 보조활동비(월액): 20만원 → 30만원
-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및 공문
 - 「지방자치법」 제40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35조, 별표 5
 -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통보 공문(2024. 3. 8)
- 비용추계: 붙임
- 입법예고(2024. 4. 5. ~ 4. 15.)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된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2023. 12. 14.)으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액이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달서구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하여 통보(2024. 3. 8.)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정자료수집 · 연구비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으로 규정하고자 함.
- 본 개정조례안은 달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비용을 현실화한 것으로 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

【 관계법령 및 공문 】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墳)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 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의회는 그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의정비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정비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⑤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을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의정비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의정비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새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4조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해당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의정비심의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결과 통보 공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통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2024. 3. 8.)에서 심의 · 의결한 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24. 3. 8.(금) 09:50 / 달서구청 5층 상황실
- 참석현황: 위원 10명 중 8명 참석
- 회의내용: 2024년~2026년 달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금액 최종 결정

□ 회의결과

- 2024년~2026년 달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금액 최종 결정: 월 150만원

붙임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서(2차) 사본 1부.
2.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5) 1부. 끝.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수신자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

담당자 장진국

서기

류수연

간사 김호희

위원장

2024. 3. 8.

성정태

협조자

시행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2

접수

우 42731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 <http://www.dalseo.daegu.kr>

전화번호 053-667-2264 팩스번호 053-667-2219 /

/ 대국민 공개

청렴 올리GO!, 구민행복 올리GO!

의 결 서

안 건	2024~2026년 달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금액 최종 결정의 건
의결내용	별지와 같음

위와 같이 의결한다.

2024. 3. 8.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2차)

위원장	성영태	성영태
위원	김상해	불참
위원	김현목	김현목
위원	박경희	박경희
위원	오병현	오병현
위원	우정숙	우정숙
위원	이유정	불참
위원	이한호	이한호
위원	장병철	장병철
위원	편소정	편소정

의 결 내 용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

- 2024년~2026년 달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금액
최종 결정

※ 관련 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심의·의결 결과

- 2024년~2026년 달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금액: 월 150만원

【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달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및 산출근거

- 의정자료수집 · 연구비(월액): 90만원 → 120만원
- 보조활동비(월액): 20만원 → 30만원

3. 관련조문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원 수는 정원으로 설정하고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제
 - 의정활동비 변경에 따른 순증가액을 기준으로 5년간(2024년~2028년) 비용추계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 발생이 예상됨.
- 추계의 결과
 - 총비용 ≈ 576,000천원(연 115,200천원)
- 재원조달방안: 구비 576,000천원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붙임

6. 작성자: 달서구의회 사무국장 이 영 규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115,200	115,200	115,200	115,200	115,200	576,000
지방세	115,200	115,200	115,200	115,200	115,200	576,000
세 출	115,200	115,200	115,200	115,200	115,200	576,000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86,400	86,400	86,400	86,400	86,400	432,000
보조활동비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144,000
재원 조달	115,200	115,200	115,200	115,200	115,200	576,000
국비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구 비	115,200	115,200	115,200	115,200	115,200	576,000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	-	-	-	-	-	-
기 타 (민자 등)	-	-	-	-	-	-

- 의정자료수집 · 연구비 연간비용 ≈ 86,400천원
 - 300,000원(인상분) × 24명(달서구의원 수) × 12개월
- 보조활동비 연간비용 ≈ 28,800천원
 - 100,000원(인상분) × 24명(달서구의원 수) × 12개월